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제도안내문 2024-1호

공제급여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원 대상 학교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장례비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 종류별 산정·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및 *간병료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 간 병 료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소견, 지급 기준 및 내부심사를 통하여 결정)
- * 대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1 학교안전사고 발생**
 - ▶ 사고통지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제회로 통보
 - ▶ **통보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
 -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사고 등록 → 출력하여 학교장 서명 → 스캔하여 파일 첨부 → 통보 처리
 - ②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 사고 등록 → 선택 입력한 학교장 휴대전화로 안내 메시지 발송 → 학교장은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서명 → 자동 통보 처리
 - ✓ 통보 미처리 시 공제회에서 확인 불가
- 2 피공제자 및 청구인은 치료 후 청구 서류 준비**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에 따른 경우)
 - 청구인[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청구액 50만원 이상 ▶ 진단서 추가
 - ✓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음
 - ※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 3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 **학교 또는 공제회로 서류 제출**
 - ① **학교로 제출할 경우**: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접속 → 학교시스템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② **공제회로 제출할 경우**: 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학부모 시스템 접속 → 모바일 인증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 꼭 시스템을 통해서만 청구 가능한가요?
: 공제급여청구서 양식에 수기 작성하여 청구자료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 ※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를 우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우편 발송은 가급적 등기 우편 발송 바랍니다.
 - ✓ 공제급여청구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첫 화면 → 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
- 4 심사**
 -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 및 연장가능
- 5 결과통보**
 - ▶ **공제 회 에 서 청구인과 공제 가입자 에 게 심사결과 통보**



[주의] 통지를 지체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치료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므로 간병료 및 요양급여 외 청구 시 필요 서류는 문의 바랍니다.

‘요양급여지급 산정 기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

구 분	급 여	비 급 여
요양급여 지급 대상 여부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지급대상	일부 항목 지급

- 급 여**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 비 급 여**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항목
- 일부 항목 지급**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의 세부지급기준에 규정된 항목

※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여 항목이더라도 세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 :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초과액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비급여 항목을 알아보을까요?

구 분	치료 항목 및 한도	
치아 보철 (한 대당)	보철	500,000원 범위 내 (2회 인정)
	캐스트코어 포스트 레진	150,000원 범위 내 (1회 인정)
	임플란트	2,000,000원 범위 내 (1회 인정) (다만 보철비 지급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한 임플란트 비용 지급)
자기공명영상 (MRI)	1회 인정	성형수술비 (수술비, 레이저치료비) 1회 인정 (흉터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지급기준액 별도)
초음파	인정	재활·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불인정(대상아님)
진단서	1부 인정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초과 시 제출)	

- ✓ 2022년 11월 7일 이후 발생한 사고로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일부 항목 심사 후 결정됩니다.
- ✓ 의사의 소견서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필요 여부 문의 ※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요양기관의 치료 지시 거부 및 방화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피공제자의 과실 부분(장해·간병·유족급여 산정 시 해당) 등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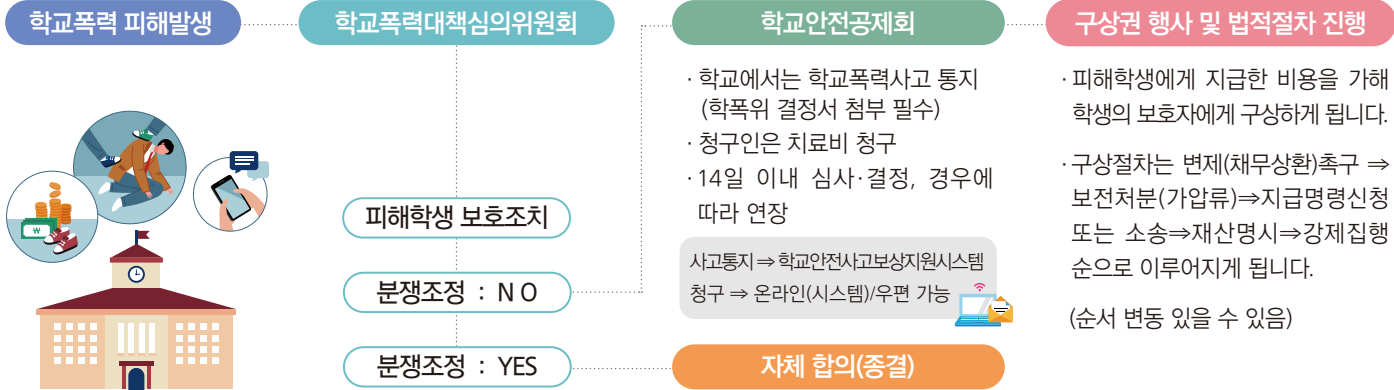
제도안내문 2024-2호

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법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을 공제회가 심사결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상환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처리절차



지원 범위 및 기간

구분	세부사항	인정기간	비고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2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의 치료비용 및 약제비	2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 보호 비용	30일	

※ 교육감 지정 기관은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회가 지원하는 치료비 등 결정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이미 가해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치료비(합의 포함)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출 서류

학교폭력사고통지(학교)	치료비 청구 시
학교폭력사고발생 통지서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인적사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처방전(해당되는 경우)
	진단서(공제회에서 요청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청구인 통장사본(온라인 청구 시 생략)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 ▶보상업무에서 출력하여 활용

지원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 미취학 아동이 속한 유치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안내문 2024-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신청내용 심의·의결	지원·연장 확정	결정 내용 통지	지원 대상에 확정되는 경우 치료 비용 청구 가능
	피해자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	지원·연장 대상자 확정 통보	치료 종결 후 비용 청구	치료 방법·비용 적정성 심의	결정 통지 비용 지급		
	학교안전공제회	청구인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대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 피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기 간** 1년(연장 가능)

- ※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은 꼭 공제회에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

지원 신청 기간 및 비용 청구 기간

지원 신청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로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비용 청구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류

상담 및 치료 지원 신청 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치료비용 청구 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상담·심리 치료대상자 선정 신청서(원본)	- 본인 또는 학교장이 대리 신청하여 등기우편 발송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	상담·심리 치료비용 청구서(원본)	- 본인 또는 학교장이 대리 신청하여 등기우편 발송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원본)	- 대리 신청 시에도 청구인 직접 작성 및 서명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 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원본)	-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	약제비·계산서 영수증(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원본)	- 신청인이 피공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청구인 통장 표지(사본)	
진단서 (원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기타 서류	- 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문위원회 및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 자료실 ▶ 보상업무 에서 출력하여 활용

